

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8년 8월 16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기금의 존속기한(2018. 12. 31.) 종료 예정에 따라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해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기금의 존속기한은 “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”를 “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”로 변경(안 제3조의2)
- 나. 「지방자치법」의 인용조문 변경내용 반영(안 제2조) 등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- 다. 기타
 - (1) 입법예고(2018. 7. 12. ~ 7. 23.) 결과: 의견 없음
 - (2) 신·구 조문 대비표: 별도 붙임
 - (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별도 붙임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”를 “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”로 한다.

제3조의2 중 “2018년 12월 31일”을 “2023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9조의2제1항제1호 중 “용역·자문”을 “용역·자문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국내 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지방정부의 범위) ① 이 조례에서 ‘국내 타지방자치단체’란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에서 규정한 <u>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</u> 및 시·군·구(서울특별시 관할구역안의 자치구는 제외)를 말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조(국내 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지방정부의 범위) ① ----- ----- ----- <u>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<u>2018년 12월 31일</u>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3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----- ----- <u>2023년 12월 31일</u>----- -----. ----- -----.</p>
<p>제9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.</p> <p>1.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</p>	<p>제9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</p>

여 용역·자문 및 연구 등을 수
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

2. (생략)

②·③ (생략)

-- 용역·자문 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-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서 비용발생 없음

4. 작성자

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김 미 영 (☎2133-5298)